

한겨레신문사 광고 게재 준칙

우리는 독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고, 신문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을 광고 게재의 원칙으로 삼는다. 한겨레신문사는 이 원칙을 준수하는 모든 개인과 법인·단체에 광고를 개방한다. 공적 사안 등에 대한 의견 광고는 본지의 논조와 상관없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1. 기준 제정의 목적

한겨레신문사 전체 임직원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나아가 독자와 광고주로부터 신뢰를 얻고,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광고 게재에 관한 세부 준칙을 마련한다. 이 준칙은 한겨레신문사가 발행 또는 운영하는 모든 매체에 적용한다.

2. 광고 게재 원칙

- 1) 광고에서는 광고의 주체가 드러나게 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 2)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광고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한겨레신문사의 광고 게재 기준에 어긋나는 광고는 광고주에게 수정을 요구하고, 수정되지 않으면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 3) 광고의 내용이 사실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광고주에게 근거 자료를 요구하거나 자료의 출처를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 4) 광고는 기사와 구분 게재해 독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하거나, 광고임을 표시해 실는다.
- 5) 게재된 광고의 내용은 광고주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진다.

3. 광고 게재 기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 1) 허위 및 과장 광고
거짓이나 불확실한 표현, 또는 사실을 과장해 독자를 현혹하는 내용의 광고
- 2) 법률로 금지된 광고
선거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법령에 따라 제한된 광고
- 3) 범죄행위 관련 광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국가기밀의 누설, 업무 방해 등 법령에 의해 범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의 광고. 법으로 금지돼 있는 사업을 위한 광고, 투기나 사행 행위를 부추기는 광고. 범죄 행위를 미화하거나, 범죄를 유도할 위험이 있는 내용을 담은 광고
- 4) 사생활 및 타인의 권리 침해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 타인의 사진이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초상권, 저작권, 상표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
- 5) 차별적 표현
인종이나 민족, 성, 성적 취향, 직업, 출생지, 종교, 심신 장애나 질병, 병력 등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그런 차별을 조장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큰 광고. 차별의 의미가 있는 기호

를 사용한 광고

6) 저속한 표현

노골적인 성 표현, 욕설이나 저속한 표현으로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광고

4. 광고심의위원회

- 1) 게재 의뢰를 받은 광고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 2) 광고심의위원회는 편집인(위원장), 광고사업 담당 임원, 논설위원실장, 편집국장, 전략기획실장(간사) 등 5명으로 구성한다.
- 3) 광고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5. 시행

- ① 광고 게재 준칙은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